

감 사 보 고 서

본인등은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에 의하여 학교법인 봉암학원의 2011.03.01. 부터 2012.02.29. 로 종결되는 2011년도의 학교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제반 증빙 문건과 장부를 일반적인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.

결산서의 각 항은 (다음에 지적된 사항을 제외하고는) 정확하였으며 그 회계처리는 적절하였습니다.

(다 음) 1. 결산내역 기재

가. 법인비

• 세입 : 5,966,700,353원정 • 세출 : 2,516,621,640원정 • 차인잔액 : 3,450,078,713원정

나. 학교비

• 세입 : 12,908,706,021원정 • 세출 : 12,798,943,239원정 • 차인잔액 : 109,762,782원정

2.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항별로 상세히 기재

가. 세입세출 관리 철저

- 추경예산편성 및 승인 전에 기정예산을 일부 초과한 상태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는 바, 모든 사안에 대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으나 예산의 적정성을 기하여 추경예산의 절차를 밟고,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.

나. 유형 자산 관리 철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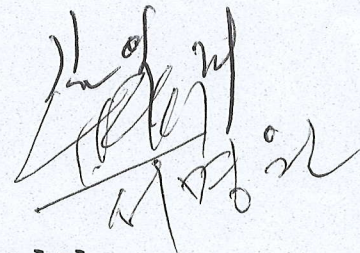
- 물품관리 시 필요한 장부를 철저히 관리하고, 규정에 의한 정기적인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유형자산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며, 전용품에 대한 공차증 발행으로 파손 및 분실에 대한 책임소지를 명확화 할 것을 권고.

2012 . 5. 4.

학교법인 봉암학원

감 사 김 익 래

감 사 서 명 원



학교법인 봉암학원 이사장 귀하